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
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‘25.10.28)됨에 따라 유·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,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(안 제19조)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

나.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(안 제25조)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

다.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(별표 1)

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11. ~ 2025. 12. 5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)”을 “(무상할당 대상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비용발생도”를 “탄소집약도”로, “1천분의 2”를 “10분의 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업체”를 “경우”로, “할당대상업체를”을 “할당대상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대중교통운영자”를 “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

5. 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중 열공급에 대해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시설 (제4차 계획기간에 한정한다)

제25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 (제19조제1항 관련)”을 “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 (제19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중 “비용발생도”를 “탄소집약도(tCO₂-eq/백만원)”로 하고,

같은 호 중 “[해당]을 “해당”으로, 같은 호 중 “(tCO₂-eq/년) ×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(원/tCO₂-eq)]”를 “(tCO₂-eq/년)”으로, 같은 호 중 “(원/년)”을 “(백만원/년)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비용발생도”를 “탄소집약도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말한다. 다만, “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“ 산정 시 기준기간은 2차 계획기간에 한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와 2차 이행연도로 한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배출량“이란 해당”을 “배출량“이란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마목(중전의 바목) 중 “마목”을 “라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)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”이란 별표 1에 따른 <u>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</u> 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.	제19조(무상할당 대상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탄소집약도</u> ----- ----- <u>10분</u> <u>의 1</u> ----- ----- -----
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업체</u> 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할당대상업체</u> 를 말한다 1. <u>지방자치단체</u> 2. ~ 3. (생략) 4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<u>대중교통운영자</u> 5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u>사업자(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</u>	② ----- ----- <u>경우</u> ----- ----- ----- <u>할당대상을</u> ----- 1. <u>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<u>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</u> 5. 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<u>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중 열공급에 대해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시설</u>

제25조(조기감축실적의 인정) ① ~ ⑥ (생략)	<u>(제4차 계획기간에 한정한다)</u> <u><삭제>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593